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1436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8. 5. 10.

판결 선고 2018. 6. 21.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가합10981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0,63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8. 6. 21.까지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17행까지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의 다음 날인 2016.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조건 성취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존하고,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 게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유리한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5. 12. 9. 2,000만원, 2016. 1. 8.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위 계약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9. 2,000만 원을, 2016. 1. 8.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계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다)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7. 10. 10.자준비서면이 2017. 10.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2016. 1. 1. 이행기가 도래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대법원 1981.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의 위 2015. 12. 9.자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2016. 1. 1.이행기가 도래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도달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고(피고는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2015. 12. 9.부터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자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위 2016. 1. 8.자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2016. 1. 8. 상계적상에 도달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 청구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남은 4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631,232원($=480,000,000\text{원} \times 0.06 \times 8/365$, 원 미만 버림) 및 원금 19,368,768원($=20,000,000\text{원} - 631,232\text{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결국 원고 청구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권은 460,631,232원($=480,000,000\text{원} - 19,368,768\text{원}$)이 남게 된다.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63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피고가 그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판결 선고일인 2018. 6.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